

선협, 선박 톤세제도 도입 적극 추진

시안 마련후 설명회 개최 · 대정부 건의 등

한국선주협회(회장 장두찬)는 선박톤세제 도입을 위해 관련 법령 시안을 마련하여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정부에 동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건의했다.

특히 협회는 5월3일 한국상선대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급히 톤세제도를 도입하여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했다. 협회는 건의를 통해 지난 1990년대 중반이후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제국에서는 자국 해운산업의 선대증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박톤세제를 도입하였으며,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 벨기에, 러시아 등 많은 국가들이 톤세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톤세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협회는 또 이같은 세계 주요해운국가들이 잇따라 톤세제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톤세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과 함께 2003년 2월 이후 한국선주협회를 비롯하여 해양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외항해운선사 관계자들로 「톤세제도입 실무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톤세제 기본구조를 연구검토한뒤 이를 토대로 톤세법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이 시안을 참조하여 톤세제 도입을 위한 법령을 제정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협회는 톤세제도가 금년중으로 도입·시행되어 해운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명실공히 우리나라가 동북아물류 중심국가가 될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의는 물론 국회입법절차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했다.

한편, 세계3위 선사인 대만 에버그린해운의 장룽파 총재는 지난해 11월 “유럽의 해운선진국들이 톤세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도는 2004년 4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한국·일본 등 아시아국가들도 톤세제를 도입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정부가 톤세제 시행을 계속 지연할 경우 주력인 해운산업을 중국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자국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선박톤세는 선사의 과세대상을 경영실적이 아닌 선박의 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추정이익, 즉 톤세이익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조세제도이다.

한편, 톤세제 도입 실무 추진기획단이 마련한 톤세법 시안은 다음과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통세시안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의 특례

제1조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① 해운기업은 해운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통수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선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운기업의 비해운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통수표준이익이란 운항한 선박의 순톤수에 일정율의 통세율과 운항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해운소득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② 해운소득이란 해상운송소득 및 해상운송에 연계된 소득으로서 제1조의 특례가 적용되는 소득을 말한다.

③ 비해운소득이란 해운소득 이외의 소득을 말한다.

④ 기준운항순톤수란 기준선박의 순톤수와 연간 운항일수를 곱한 순톤수의 합계를 말한다.

⑤ 용선운항순톤수란 2년미만 외국적 용선선박의 순톤수와 연간 운항일수를 곱한 순톤수의 합계를 말한다.

⑥ 기준선박이라함은 통세기업이 소유한 한국선박(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을 포함한다)과 2년이상의 기한으로 용선한 한국선박(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포함한다)으로서 통세기업 요건 산정시 기준이 되는 선박을 말한다.

제3조 (특례의 적용)

① 해운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1조의 특

례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조의 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이하 “통세기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통세적용기간”이라 한다)동안 제1조에 의한 특례가 적용된다.

③ 통세기업이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제①항의 요건을 2회 상실하는 경우 당해 연도부터 통세기업의 자격을 상실한다.

④ 통세기업이 통세적용기간중에 제3항에 의한 통세기업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당해자격을 상실하는 해부터 통세적용기간의 잔여 기간, 그리고 잔여기간이 종료된 사업연도의 다음해로부터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제1조에 의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⑤ 통세적용기간 종료 후 법 제1조의 특례를 선택하지 않은 해운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시 법 제1조에 의한 특례를 선택할 수 없다.

제4조 (해운소득의 범위)

해운소득'이라 함은 해상운송소득 및 해상운송에 연계된 소득을 말한다.

제5조 (통수표준이익)

① 통수표준이익은 통세기업의 선박별 통수표준이익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② 선박별 통수표준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선박별 순톤수 × 선박별 운항일수 × 100순톤당 1운항일 통세율 × 사용율

제6조 (상계금지)

제1조 제1항의 해운소득의 통수표준이익과 제2항의 비해운소득의 과세표준 산출세액은 상계될 수 없다.

제7조 (통세기업의 감가상각 등)

① 통세기간중 통세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만큼 감가상각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톤세기업이 톤세적용기간이 종료되어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기업의 톤세적용 기간중의 감가상각비는 이를 법인세 적용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와 합산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톤세기업의 톤세적용기간 이전에 발생한 유보 사항은 톤세부문 유보와 법인세부문 유보로 구분하여 톤세적용기간동안의 톤세부문과 법인세부문에 서 각각 별도로 관리한다.

④ 톤세기업의 톤세적용기간 이전에 발생한 이월 결손금은 톤세적용 기간동안에도 법인세 부분과 통합하여 관리한다.

⑤ 톤세적용기간과 법인세적용기간에 걸쳐 연속하여 사용된 자산의 처분손익에 대해서는 그 사용기간별 비율에 따라 각각 톤세와 법인세를 적용한다.

제8조 (톤세제도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조 특례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관련 정부 업체, 학계 및 해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톤세제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톤세제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이의신청)

① 제1조의 특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기업은 제8조의 톤세제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부칙)

이 법은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톤세법 시행령

제1조 (해운기업의 범위)

① 법 제1조의 '해운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1. 해운법 제3조 제3호에 의한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2. 해운법 제3조 제4호에 의한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3. 해운법 제25조 제2호에 의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4. 해운법 제25조 제3호에 의한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제2조 (적용선박)

법 제1조 제1항의 '선박'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용역을 수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3조 (공동 소유 또는 용선선박의 순톤수 산정)

법제2조 4호 및 5호의 순톤수 산정시 2개이상의 해운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용선한 선박의 경우에는 해운기업별 당해소유 또는 점유 비율대로 산정한다.

제4조 (톤세기업의 요건)

① 법 제3조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해운기업의 용선운항순톤수가 기준운항순톤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② 톤세기업의 톤세적용기간 동안 법 제3조 3항에 의한 톤세기업의 적격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 (톤세적용기간)

법 제3조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6조 (해운소득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해상운송소득이라 함은 다

음 각 호의 1의 활동으로 인한 소득을 말한다

1. 해상운송 활동
2. 해상운송을 위한 영업 및 영업 관련 활동
3. 해상운송 선박의 관리 및 부대사업과 관련된 활동

② 법 제4조 제1항의 해상운송에 연계된소득이라 함은 제1항 이외의 활동으로 인한 소득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 제1조 제1항의 선박이 해운법 제26조의 2 제2항에 의한 등록외사업구역 운송으로 발생한 소득은 이를 법 제4조에 의한 해운소득으로 본다. 다만, 당해소득이 당해기업의 해운소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운항일수)

① 법제5조 제2항의 산식의 선박별 운항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톤세기업이 운항하고 있는 선박의 정비개량보수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연속적으로 30일 이상 운항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항한 것으로 본다.

② 톤세기업이 선박을 대선한 경우에는 대선기간을 운항일수로 본다.

제8조 (톤세율)

법 제5조 제2항의 100순톤당 1운항일 톤세율은 다음의 표에 의한다

선박의 순톤수	100순톤당 1운항일 톤세율
1톤 이상 1,000톤 이하	500원
1,000톤 초과~10,000톤 이하	400원
10,000톤 초과~25,000톤 이하	250원
25,000톤 초과	130원

제9조 (사용율)

① 법 제5조 제2항의 산식에서 '사용율'이라 함은 특정 선박을 운항함에 있어 당해 톤세기업이 경

제적?실질적으로 점유하는 비율을 말한다.

② 톤세기업이 독점적으로 선박을 운영하는 경우 사용율은 100%로 한다.

③ 톤세기업이 특정선박을 공동구매, 선복임대차 등의 방법으로 타인과 공동으로 운항하는 경우 회사가 실질적으로 점유하는 비율만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톤세제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제8조 제1항의 톤세제도심의위원회는 재정경제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등의 관계기관과 조세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선주협회 등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법제8조 제2항에 관한 기타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이의신청 절차)

① 톤세제도심의위원회는 법제9조에 의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톤세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관련당국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한국선주협회는 4월 22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해운산업 부문 톤세제 도입관련 설명회를 가졌다. 금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1년간 톤세제 도입 실무기획단에서 협의된 우리나라 톤세제도의 기본방향을 설명하고 외항선사의 의견을 수렴했다. 협회는 외항선사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5월에 톤세법 시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톤세제 도입방안을 정리한 것이다.